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소영철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314
----------	------

발의 년 월 일: 2025년 10월 20일
발의자: 소영철, 강석주, 김경훈,
김규남, 김영철, 김용호,
김원중, 김재진, 김태수,
김혜영, 남궁역, 신복자,
심미경, 유정인, 유정희,
윤기섭, 이성배, 이종환,
이효원, 임춘대, 장태용,
홍국표, 황유정 의원(23
명)

1. 제안이유

-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소비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, 근로자들이 배달 라이더 등 근무시간이 유연하고 보상이 높은 일자리를 선호하면서 구인난 극복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소상공인 매장에서 키오스크, 스마트 오더 등 무인화 기술이 확산되고 있음.
- 하지만, 영세 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장이 협소하고 자금 및 디지털 역량의 부족 등으로 무인화 기술을 도입하기에 한계가 있으며, 구직 방법도 온라인 채용 방식보다는 주변의 소개, 사설 직업소개소 등에 의존하고 있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.
- 따라서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구인과 근로자의 구직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.

2. 주요내용

-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지원 사업을 위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실시함(제8조 제9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제8조제9호를 다음과 신설한다

9.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경영 및 창업지원)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 <p><u>9.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</u></p>	<p>제8조(경영 및 창업지원)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<u>9.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</u></p> <p><u>10.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</u></p>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·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제8조(경영 및 창업지원)제9호	△	소상공인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사업 비용이 발생하나 서울시 관련부서(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및 경제실 일자리정책과) 문의결과) 정책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구체적·객관적 추계가 곤란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- 안 제8조(경영 및 창업지원)제9호의 소상공인 인력확보 지원사업 비용 등은 서울시 관련부서(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및 경제실 일자리정책과) 문의결과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객관적 추계가 곤란함

〔참고〕 추계 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

- 추계를 위한 자료조사 결과 영세 자영업자의 구인과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연계해주는 사업의 추진방식에 따라 소요비용 차이가 클 것 보여 구인지원과 관련된 통상적 사례를 통한 합리적 추계 또한 곤란함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현

추계분석관 손 제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1) [사업추진 주요목적 고려] 서울시에 기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정책은 주로 구직에 초점이 맞춰져 이는 소상공인 구인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향후 해당규정을 근거로 한 사업이 별도로 추진될 시 관련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보임